

# 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제3170호 |
|----------|--------|

제출년월일 2023. 3. .  
제출자 김포시장

##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상위법과 위임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고자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 변경(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김포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나. 조례 본문 내 용어 일괄 변경(자연재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생략(「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 2) 부서협의 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 가)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관리정책과
    - 나) 경기도 : 자연재난과

## 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김포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19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①항” 을 “제1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 실·과·소    |                | 안전담당관                   |
|-------------|----------------|-------------------------|
| 입<br>안<br>자 | 실·과·소장<br>성 명  | 안전담당관<br>김 광 식          |
|             | 팀 장<br>직위·성명   | 자연재난팀장<br>연 규 환         |
|             | 담 당 자<br>성명·전화 | 지방시설주사보<br>김 진 수(☎2913)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u>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방향) <u>자연재해위험지구</u>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자연재해위험지구</u>”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 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p> <p>2. (생략)</p> <p>3. “<u>건축 행위</u>”라 함은 「<u>건축</u></p> | <p><u>김포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자연재해대책법</u>」 제15조제3항-----<br/>-----<br/>-----<br/>-----.</p> <p>제2조(기본방향) <u>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u> -----<br/>-----<br/>-----<br/>-----.</p> <p>제3조(용어의 정의) -----<br/>-----.</p> <p>1. “<u>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u>”라 함은 「<u>자연재해대책법</u>」 제12조제1항-----<br/>-----<br/>-----<br/>-----.</p> <p>2. (현행과 같음)</p> <p>3. ----- 「<u>건축</u></p> |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 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7. (생략)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 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 제2조제1항제8호-----

----- 같은 법 제19조--

4. ~ 7. (현행과 같음)

8.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② (생략)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2. (생략)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생략)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  
-----  
-----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  
-----  
-----  
-----.

1. 2. (현행과 같음)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  
-----
4. (현행과 같음)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  
-----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 2. (생략)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생략)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  
-----.

1. · 2. (현행과 같음)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  
-----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  
-----  
-----  
-----  
--.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22.>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